이 보도자료는 2019. 4. 15.(월) 14:00(2019. 4. 16.자 조간용)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 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인천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1차장검사 전형근

전화 032-861-5002 / 팩스 032-860-4305

보도자료 2019. 4. 15.(월)

자료문의 : 금융·조세범죄전담부장실 전화번호: 032-861-5008 주책임자 : 부장검사 이창수

제 목

공적자금을 편취한 자료상 3개 조직 적발

- 900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, 허위매출을 일으켜 16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3개 조직 20명 적발 (5명 구속)

- □ 인천지방검찰청 금융·조세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이창수)는 2019. 1.~ 3. 동안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'자료상'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.
- ① 8개 간판업체1)를 운영하며 81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 허위 매출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권 등에서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'자료상 및 바지사장, 그 과정에서 **세무서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그 금원을 수수**한 '브로커' 등 8명 (그 중 4명 직구속).
- ② 다수의 유령법인의을 설립해 8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, 허위 매출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권 등에서 1억 5,900만 원 상당을 편취 한 '자료상 및 바지사장' 등 8명 (그 중 총책 1명 직구속),
- ③ 유령법인 명의 허위소득신고서 등을 근거로 금융권 등에서 3억 2,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, 그 과정에서 은행 지점장에게 청탁해 대출을 알선해주 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브로커 등 4명을 인지하였음

[3개 조직 총 20명 적발하여 5명 구속기소 9명 불구속기소 6명 약식명령 청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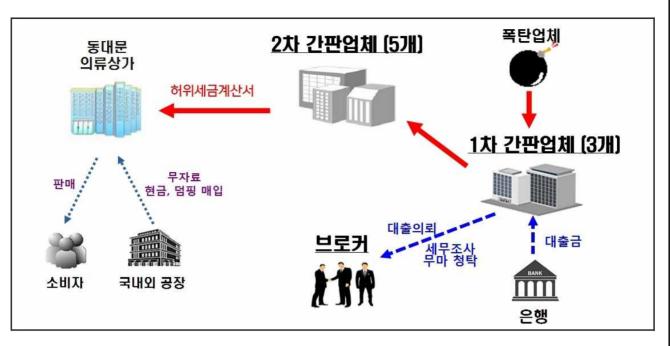
□ 위 사건들은 대부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내지 이송된 바지사장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었으나, 조세 전문 검사실에서 철저히 보강 수사 하여 사안의 실체를 밝히고, 이와 연관된 금융비리까지 적발한 사례임

¹⁾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득(일명 '자료상')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업체

²⁾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

1

사례1 [동대문 의류상가에 81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유통하고,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간판업체(자료상) 사안]



가. 실물의 유통과정이 왜곡된 편법거래

- 실제로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'무자료로 덤핑구매하거나, 중국 등 공장에서 직접 구입'한 의류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임
 - '간판업체 운영자'는 매입의 근거자료가 필요한 동대문 의류상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, 마치 '폭탄업체³) → 1차 간판업체 → 2차 간판업체 → 동대문 의류상가' 순으로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를 위장
- □ 무자료 덤핑으로 의류를 구입해 판매하여 (정상거래보다) 많은 수익이 발생한 동대문 의류상가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사실상 부가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되고, 반면 3단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하면서 세금을 전가받은 폭탄업체는 폐업시켜 <u>종국적</u> 으로는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불합리 발생

나. 자료상에서 대출사기로 범행 진화

- 간판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, 매출을 가장하여 '기업운용자금, 기업 마이너스 대출, 기업운전자금' 등 <u>각종 대출 실행</u>하고,
-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 <u>신차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구입한 신차를</u> 속**칭 '대포차'로 판매**한 후 대금을 나누어 가짐

다. 부당 대출과정에서 브로커 등장

● 사기 대출과정에 관여한 브로커가 국세청에 로비를 하여 <u>세무조사를 무마</u> 시켜주겠다며 7,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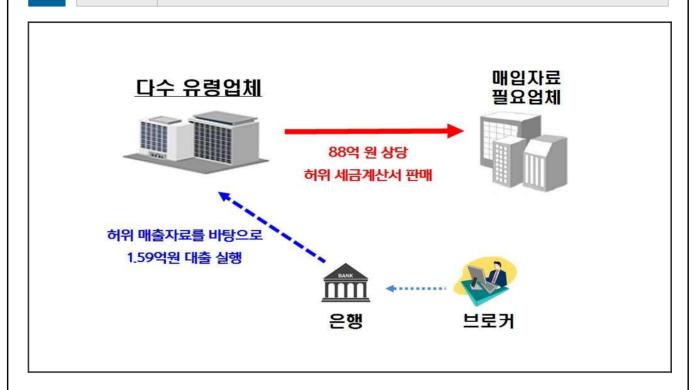
³⁾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과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

라.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	역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	처 분	
1	간판업체 운영자	가 〇〇 [52세] [1차 간판업체(A~C) 3개 운영자]	□ 1차 간판업체 3개 명의로 36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{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)} □ A업체 2.35억 원, B업체 3.45억 원, C업체 2.15억 원 각 대출 사기	구속 기소	
2		운영자	나 〇〇 [여, 51세] [2차 간판업체(D~H) 5개 사장]	□ 공모하여 2차 간판업체 5개 명의로 45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	구속 기소
3		다 ○○ [61세] [2차 간판업체 5개 부사장]	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))	구속 기소	
4		라 〇〇 [41세] [1차 간판업체(A) 바지사장]	□ 가○○과 공모, - A업체 명의 12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 수수 {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)} - A업체 명의 2.35억 원 대출 사기 □ 사○○과 공모, 1.4억 원 대출 사기	불구속 기소	
5	장시자비	마○○ [49세] [1차 간판업체(B) 바지사장]	가○○과 공모, - B업체 명의 111억 원 상당의 허위세 금계산서 수수 {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)} - B업체 명의 3.45억 원 대출 사기	불구속 기소	
6		바 ○○ [39세] [1차 간판업체(C) 바지사장]	□ 가○○과 공모, - C업체 명의 124억 원 상당의 허위세 금계산서 수수 {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)} - C업체 명의 2.15억 원 대출 사기 □ 사○○과 공모, 1.8억 원 대출 사기	불구속 기소	
7	브로커	사 〇〇 [51세]	□ 라○○과 공모, 1.4억 원 대출 사기 □ 바○○과 공모, 1.8억 원 대출 사기 □ 아○○과 공모, 세무조사 무마 명목 으로 라○○으로부터 1,600만 원, 마○○으로부터 1,700만 원, 바○○ 으로부터 4,500만 원 각각 수수 {변호사법위반}	구속 기소	
8		아 〇 [46세]	□ 사○○과 공모,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라○○으로부터 1,600만 원, 마○○ 으로부터 1,700만 원, 바○○으로부터 4,500만 원 각각 수수 (변호사법위반)	불구속 기소	

사례2 2

[대출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사안]



가. 대출목적 계획적·조직적 범행

●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,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(바지 사장)를 모집해 사업자를 등록한 후 1억 5,900만 원 상당의 '소상공인 사업자 대출' 등을 받아 나누어 가지고, 88억 원 상당의 실물 없는 허위 세금계산 서를 발행해 유통한 사안

나.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악용한 범행

- '소상공인 사업자대출'은 대출절차가 간이하고,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부실대출 위험성이 상존
- ☞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**다수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비교적 소액을 간이하게 대출해** <u>주어 시행초기 사기 범행에 많이 이용</u>되었음

다. 대출사기 범행의 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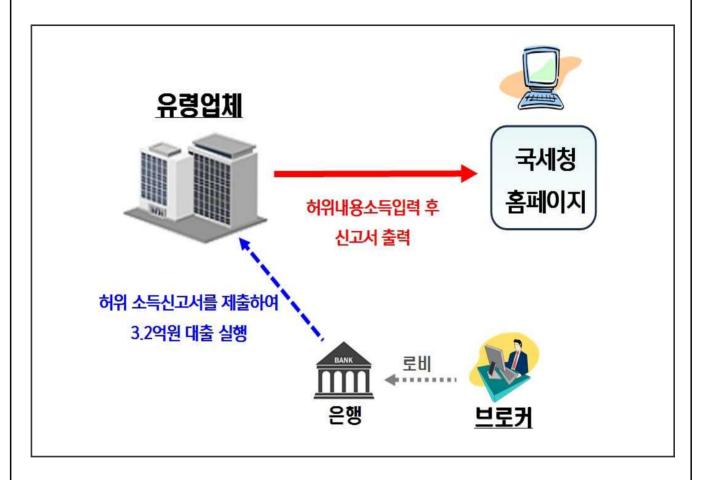
- '소상공인 사업자대출'에 사고(부도)가 많이 발생하여 대출 요건이 엄격해지자, 비교적 심사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진화
- ☞ 금융기관은 보증재단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어 수사의뢰 등에 소극적이었고, 결국 막대한 세금이 투자된 보증재단 내지 국고에 손실이 발생

라.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	역 할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	처 분
9	총책	자 〇〇 [24세]	□ 4개 유령법인(I~L) 명의로 88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{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)} □ 아래 각 사기 및 - 유령법인 L관련 바지사장 명의로 1,000만 원의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사기	구속 기소
10	바지사장	차 ○○ [44세] [유령법인 M 바지사장]	□ 자○○과 공모, 유령법인 M관련 - 소상공인 사업자금 2,000만 원 대출 사기 - 차량구입 자금 3,000만 원 대출 사기	불구속 기소
11		카 〇〇 [54세] [유령법인 J 바지사장]	□ 자○○과 공모, 유령법인 J관련 - 소상공인 사업자금 1,500만 원 대출 사기 - 차량구입 자금 3,400만 원 대출 사기	불구속 기소
12		타 〇〇 [56세] [유령법인 N 바지사장]	□ 자○○과 공모, 유령법인 N관련 - 소상공인 사업자금 1,000만 원 대출 사기 - 차량구입 자금 2,900만 원 대출 사기	불구속 기소
13		파 〇〇 [56세] [유령법인 K 바지사장]	□ 자○○과 공모, 유령법인 K관련 소상공인 사업자금 1,000만 원 대출 사기	약식명령 청구
14	총책의 직원	하○○ [25세]	□ 자○○과 공모, 유령법인 L관련 소상공인 사업자금 1,000만 원 대출 사기 가담	약식명령 청구
15		거 ○○ [24세]	□ 자○○과 공모, 유령법인 K관련 소상공인 사업자금 1,000만 원 대출 사기 가담	약식명령 청구
16		너 〇〇 [25세]	□ 자○○과 공모, 유령법인 바지사장 명의 7개 통장 모집 [전자금융거래 법위반]	약식명령 청구

3

사례3 [허위 소득신고서를 근거로 3억 2,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안]



가. 소득신고서 발행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

- '국세청 홈텍스'에 접속해 유령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<u>허위의 수입</u> 금액을 기재하고 신고서를 출력한 후 이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3회에 걸쳐 3억 2,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안
- 위 소득신고서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입력한 내용 그대로 출력되고,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얼마든지 허위내 용의 신고서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

나. 부당 대출과정에서 브로커 등장

● 사기 대출과정에 브로커가 관여하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 출금의 10%를 수수료로 수령

다.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	역 할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	처 분
17	유령업체 명의자	더 〇〇 [60세]	□ '국세청 홈텍스'에서 발급받은 유령 업체 명의 허위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하며 금융권에서 3회에 걸쳐 3.2억 원 대출 사기	불구속 기소
18	공범	러〇〇 [61세]		불구속 기소 (별건 구속)
19	브로커	머 〇〇 [61세]	□ 더○○에게 2억 원의 대출을 알선 해주고, 수수료로 2,000만 원 수수 {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알선수재)}	약식명령 청구
20		버 〇〇 [66세]	□ 더○○에게 1억 원의 대출을 알선 해주고, 수수료로 1,000만 원 수수 【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알선수재)}	약식명령 청구

4 사건 분석 및 향후 계획

● 조직적 자료상의 실체 규명

- 자료상 범행의 피해자는 국가로 피해를 보는 개인이 없고, 범행관계자들 모두 범행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<u>공생관계</u>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업체 주소지 별로 개별적으로 고발 및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<u>적발이 어려움</u>
- □ [배후의 총책] 사례1의 경우 총책 '나○○'의 존재 및 인적사항, 실사업장 위치는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, 관련자들 역시 수사과정에서 총책의 존재를 철저히 함구하였고, 사례2의 총책 '자○○' 역시 바지사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대출을 실행하여 세무당국 및 경찰에서 조차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지못하였음
- □ [허위고소] 공범들은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 후 시건이송신청을 하거나,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 서로 짜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후 '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'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였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취소하였음(일부행위는 무고죄로 인지)
- [간판갈이]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**상호를 변경하고, 간판을** 바꿔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기도 하였으나,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사안의 실체를 밝히고,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총책까지 검거하였음

- 전문적인 '자료상 조직'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처벌함으로써 <u>거래질서의 왜곡을</u> 바로잡고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
- ☞ 사례2의 총책 '자○○'은 <u>체포 당시에도 7개 유령업체 명의로 속칭 '작업대출'을</u> 진행하고 있었고, '자○○'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음
- ◎ 공적자금과 관련된 금융비리 사범 적발
 - '소상공인 대출'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출은 절차가 비교적 간이한 편이어서 실질적인 실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부실 대출의 위험성이 상존
 - 이와 같은 허점을 악용하여 불법대출을 일삼고 <u>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을</u> 자신들의 불법이익 취득에 이용한 피고인들을 엄단
- □ 피해보증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, 서울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서울보증보험 (93% 예금보험공사 출자기관)